

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8. 10. 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8조 제2항제3호의 인근지역 주민대표 인원을 “3명” 이내에서 “5명”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8조제2항제3호 위촉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“3명 ”이내에서 “5명”이내로 인근지역 주민대표를 추가

3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및 같은 법 시행령

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2항제3호 중 “3명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8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) ①~② 생략 1.~2. (생략) 3.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. ③ (생략)	제8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) ①~② (원안과 같음) 1.~2. (원안과 같음) 3. 5명 ③ (원안과 같음)

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”을 “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영 제6조제3항”을 “법 제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1(주민의 견학등)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설치예정 및 운영 중인 해당 면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 중 “주민지원협의체”를 “주민지원협의체(이하 “지원협의체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1(주변영향지역주민의 인정)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인정 범위는 입지결정고시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자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25조”를 “법 제25조 및 제25조의2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매립장”을 “폐기물처리시설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면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영 제18조의 규정”을 “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의 규정”으로 하고 “주민지원협의체(이하 “지원협의체”라 한다)”를 “지원협의체”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,면,동별 주민 중 시의회에서 선정한 대표”를 “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.

1. 시의회의원 : 4명(해당지역 의원 포함)
2.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: 2명
3.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.

③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.

제10조 조명 중 “기금운용.관리위원회”를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구미시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.관리위원회”를 “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.”를 “제5조의1의 규정에 의한 주민으로 한다.”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18조제1항 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”를 “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